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. 10. 18 선고 2022가단188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0. 4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임야 839㎡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57㎡ 지상 무허가 건물과 같은 도면 표시 ㉗, ㉘, ㉙, ㉚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1㎡ 지상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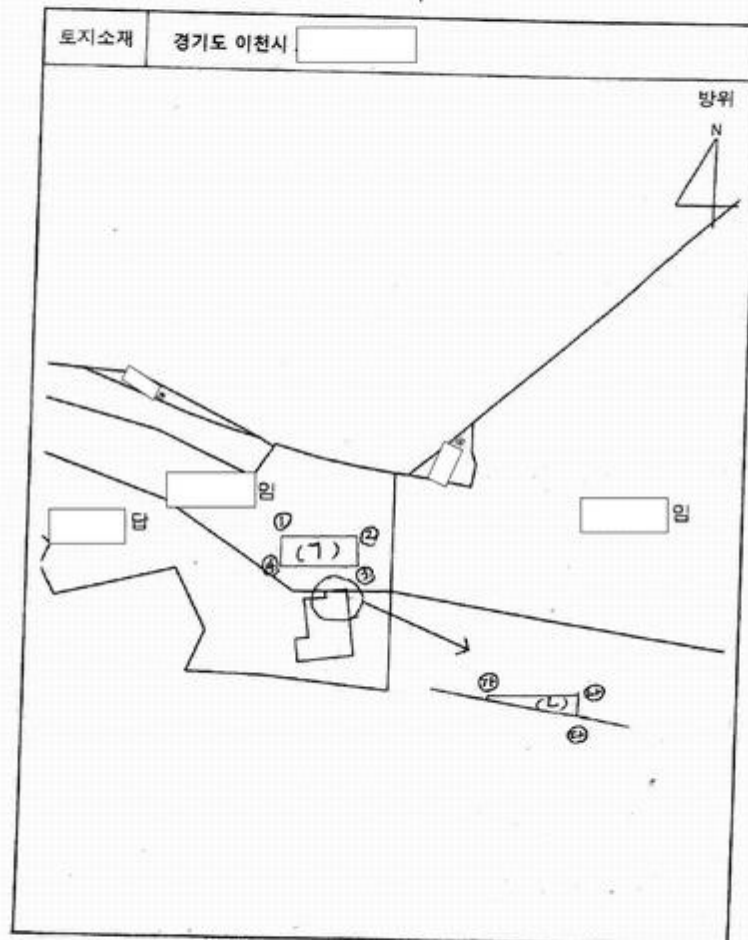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수정

[별지]

## 도면



## 청 구 원 인

- 경기도 이천시 C  일야 839㎡의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(갑제1호증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). 위 원고 소유 일야에 인접 한 경기도 이천시 D  답 1104㎡는 피고가 2020. 8. 20. 협의분할로 상속 받은 소유자입니다.(갑제2호증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)
-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, 원고 소유의 위 C  토지 중 별지 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㉠의 각 점을 연결한 (ㄱ) 선내부분 57㎡(갑제3호증 지적측량 결과부 중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)에 무허가 건물을 축조하였고, 위와 같은 번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㉡, ㉢, ㉣, ㉡의 각 점을 연결한 (ㄴ) 선내부분 1㎡(갑제3호증 지적측량 결과부 중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)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.
- 그래서 원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를 통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 지적측량 결과부(갑제3호증)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므로 송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려 주시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 입 증 방 법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원고 소유)       | 1통 |
| 1.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피고 소유)       | 1통 |
| 1. 갑 제3호증 지적측량 결과부(2022. 4. 8.자) | 1부 |
| 1. 갑 제4호증 내용증명(2022. 4. 13.자 발송) | 1통 |

